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 11. 4.

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4년 10월 14일

나. 발 의 자: 이성수 의원 외 7명

다. 회부일자: 2024년 10월 18일

라. 상정일자: 제25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2024. 11. 1.)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이성수 의원)

가. 제안이유

❍ 영등포구의회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의회에 소속된 의원 및 직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 의무를 규정하고, 청렴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추진 사업 등에 대해 정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의장의 책무(안 제3조)

❍ 공직자등의 청렴 의무(안 제4조)

❍ 추진사업(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이수형)

❍ 본 제정조례안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는 본 조례안의 적용 대상이 되는 “공직자 등”을 정의하여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함.
- 안 제3조에서 의장에게 공직자 등이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무 여건 조성을 위한 책무를 부여하고,
- 안 제4조에서 공직자 등에게 공정한 직무수행 의무 및 부패·품위 손상 행위에 대한 금지의무를 명시함.
- 안 제6조는 매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함을 규정
- 안 제7조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교육·홍보 및 부패방지 시스템 구축 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 안 제9조에서는 의장이 청렴도 진단 및 평가를 실시하는데 있어 그 방법을 설명하고 공직자 등이 자료제출 및 설문참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을 규정함.

❍ 검토 결과

- 본 조례안은 영등포구의회에 소속된 지방의회의원, 지방공무원 등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청렴도 향상을 위해 단순히 선언적 의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년도 청렴도 결과 등을 반영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청렴도 평가 및 향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음. 해당 조례안은 청렴한 영등포구의회 구현에 바람직하고 타당한 제정이라고 판단됨.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

(이성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11

발의연월일: 2024. 10. .

발 의 자: 이성수、이규선、유승용 차인영、신흥식、김지연 이순우、전승관 의원(8인)

1. 제안이유

영등포구의회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의회에 소속된 의원 및 직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 의무를 규정하고, 청렴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추진 사업 등에 대해 정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장의 책무(안 제3조)

나. 공직자등의 청렴 의무(안 제4조)

다. 추진사업(안 제7조)

3. 제정안: “별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을 통해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등”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소속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나.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 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다.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2.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의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공직자등이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하며, 공직자등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직자등의 청렴 의무) 공직자등은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의장은 매년 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법 제27조의2에 따른 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 등 전년도 청렴도 관련 조사 결과 실태 분석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

3. 청렴도 향상 및 부패행위 방지를 위한 시책·추진과제

4. 그 밖에 의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기본계획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구민 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추진사업) 의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렴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

2. 반부패・청렴활동 연구 및 설문조사

3. 청렴 및 부패사례 연구・설문조사

4. 부패행위 방지 시스템 구축・운영

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협력체계) 의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행위 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청렴도 진단 및 평가) ① 의장은 의회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청렴도 진단・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의장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청렴도 진단・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공직자등은 제2항과 관련하여 자료제출, 설문참여 등 청렴도 진단・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청렴도 진단・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포상) 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표창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지급 및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1. 청렴도 향상 활동 결과에 따른 우수 공직자등

2. 청렴도 향상 활동에 참가・응모하여 선정된 사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